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◇ 행정규칙명 :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

#### 1. 개정 이유

- '21. 6. 21. 국토교통부 고시 「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」 개정에 따른 「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」 개정
  - 투표제 우선 적용, 간이공모신설 등 국토부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미비점 보완 등
  - 투표제, 채점제 등 공모안심사방법 관련 장을 신설하고, 업무절차에 맞게 조문체계 재정비 등 운영지침 전면개정

#### 2.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업무절차에 맞게 조문체계 재정리 및 용어정리(제3조 등)
  - 투표제 등 공모안 심사방법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 등 업무절차에 따라 조문체계 재정리
- 나. 공모안 심사방법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(제26조~제41조)
  - 투표제, 채점제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추가하여 별도의 장 신설
- 다. 간이공모 신설(제55조~제57조)
  - 2억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간이공모 신설 등
- 라. 심사위원 기피 절차 개선 등(제21조)
  - 기피절차 미준수업체에 대한 실격조항 신설 등
- 마. 채점제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(제40조)
- 바. 별표 및 별지 신설, 변경, 삭제 등('별표 4의1' 등)